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6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6 · 6월

문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상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기환경 분야

② 토지환경 분야

③ 교통환경 분야

④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정답 3번

①

대기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야이며, 세부평가항목은 **기상·대기질·악취·온실가스**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②

토지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야이며, 세부평가항목은 **토지이용·토양·지형 및 지질**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 · 지질

NoteBase

③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야는 자연생태환경·대기환경·수환경·토지환경·생활환경·사회환경 및 경제환경의 여섯 분야이다. **교통환경은 별도의 평가 분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2. 환경영향평가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 · 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 · 지하) 2) 수리 · 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 · 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 · 진동 3) 위락 · 경관 4) 위생 · 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바. 사회환경 · 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④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야이며, 세부평가항목은 **인구·주거(이주 포함)·산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바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바. 사회환경 · 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NoteBase

문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서 폭염·도시열섬 등 기후 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후보호형 도시숲
② 생태계 보전형 도시숲
③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
④ 재해방지형 도시숲

정답 1번

공통 해설

기후보호형 도시숲은 **폭염·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4>
1. 기후보호형 도시숲등: 폭염 · 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 ·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NoteBase

문 3. 「조경기준」 상 '식재수종'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록수의 식재비율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②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30퍼센트 이상
③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40퍼센트 이상
④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50퍼센트 이상

정답 1번

공통 해설

상록수의 식재비율은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이다.

조경기준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NoteBase

문 4. 「조경설계기준(2024)」상 표토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토 채집 가능구간 및 표토량, 토양조사의 결과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표토 활용대상지 및 소요량, 경제성을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표토의 채취 가능량과 활용 소요량을 맞추어 과도한 표토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③ 생태복원 및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잔여 표토의 인접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④ 표토는 생태복원에 주요한 자연자원이므로 소요량이 작아도 표토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표토활용계획은 **채집 가능구간·표토량, 토양조사에 따른 활용 가능성, 활용대상지·소요량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KDS 34 20 15:2024 표토보전 및 활용 2.2(1)
2. 조사 및 계획

2.2 표토 활용 계획

(1) 표토 채집 가능구간 및 표토량, 토양조사의 결과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표토 활용대상지 및 소요량, 경제성을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NoteBase

②

표토는 **채취 가능량과 활용 소요량을 맞추어 과도하게 채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KDS 34 20 15:2024 표토보전 및 활용 2.2(2)
2. 조사 및 계획

2.2 표토 활용 계획

(2) 표토의 채취 가능량과 활용 소요량을 맞추어 과도한 표토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① 소요량이 작아서 표토의 채취가 필요없는 사업의 경우 표토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② 생태복원 및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잔여 표토의 인접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③

생태복원과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잔여 표토를 인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KDS 34 20 15:2024 표토보전 및 활용 2.2(2)②
2. 조사 및 계획

2.2 표토 활용 계획

(2) 표토의 채취 가능량과 활용 소요량을 맞추어 과도한 표토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생태복원 및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잔여 표토의 인접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NoteBase

④

소요량이 작아서 표토의 채취가 필요 없는 사업은 표토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표토가 중요한 자연자원이라는 이유로 소요량과 관계없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KDS 34 20 15:2024 표토보전 및 활용 2.2(2)①
2. 조사 및 계획

2.2 표토 활용 계획

(2) 표토의 채취 가능량과 활용 소요량을 맞추어 과도한 표토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① 소요량이 작아서 표토의 채취가 필요없는 사업의 경우 표토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생태·자연도
ㄴ. 환경성평가지도
ㄷ. 임상도
ㄹ.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생태·자연도를 고려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3.29, 2018.1.9, 2020.5.4>
1. 지정에 관한 기준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 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환경성평가지도를 고려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3.29, 2018.1.9, 2020.5.4>
1. 지정에 관한 기준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 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NoteBase

ㄷ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임상도를 고려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3.29, 2018.1.9, 2020.5.4>
1. 지정에 관한 기준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 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3.29, 2018.1.9, 2020.5.4>
1. 지정에 관한 기준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 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NoteBase

문 6. <보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원시설과 종류를 연결한 것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유희시설 — 낚시터
ㄴ. 편익시설 — 일반음식점
ㄷ. 운동시설 — 자연체험장
ㄹ. 교양시설 — 전망대
ㅁ. 유희시설 — 동물놀이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정답 1번

ㄱ

낚시터는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인 **유희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Alvg_DTRQQRn5Zuz7J88mGYzGjDHUPXC.webp

ㄴ

일반음식점은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편익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xhGKH8b3Phc_eQnYIuFrjuW7lg5zuVko.webp

NoteBase

ㄷ

자연체험장은 운동시설로 분류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f_mdKy5UfRzhFbq9Rw9pZ1JibN7lgvuZ.webp

ㄹ

전망대는 교양시설이 아니라 **편익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xhGKH8b3Phc_eQnYIuFrjuW7lg5zuVko.webp

ㅁ

동물놀이터는 유희시설이 아니라 **'그 밖의 시설'**로 분류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다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BpCCWV8f1Dwkyji0oJgN-YmO7bOFlaLB.webp

NoteBase

문 7. 경관생태학에서 패치(patc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식물과 동물 서식처가 점점 더 파편화된 패치로 나타난다.

② 일반적으로 큰 패치가 작은 패치보다 더 큰 개체군을 유지한다.

③ 종이 국지적으로 멸종할 가능성은 패치의 크기가 작고 서식처의 질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④ 큰 패치가 여러 패치로 나누어지면, 주연부 서식처가 줄어듦으로써 주연부 종의 개체군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주연부 서식처가 줄어든다'는 설명이 반대이다. 큰 패치가 여러 작은 패치로 나뉘면 일반적으로 **주연부의 비중이 커지고 내부 서식처가 줄어든다**. 따라서 주연부 종이 감소한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연부 환경을 이용하는 종은 증가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패치(patch)는 주변과 구별되는 비교적 균질한 공간 단위로, 숲이나 습지 등이 경관 속에서 하나의 패치를 이룰 수 있다.

① O: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도로 등 개발이 확대되면서 연속된 서식처가 작은 조각으로 나뉘기 쉽다. 이처럼 **서식처가 분할되고 서로 떨어지는 현상**이 파편화이며, 식물과 동물의 서식처가 여러 패치로 남게 된다.

② O: 서식처의 질 등 다른 조건이 비슷하면 큰 패치는 먹이·번식 공간 등 이용 가능한 자원이 더 많으므로 **더 많은 개체를 부양**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작은 패치보다 큰 개체군을 유지한다.

③ O: 작은 패치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 개체 수가 적어 우연한 사망이나 번식 실패가 개체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여기에 서식처의 질까지 낮으면 먹이·은신처·번식 조건이 불리해져 **국지적 멸종 위험이 높아진다**.
국지적 멸종은 해당 종이 특정 지역이나 패치에서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④ X: 주연부는 패치가 주변의 다른 환경과 맞닿는 가장자리 부분이다. 큰 패치가 여러 작은 패치로 나뉘면 새로운 경계가 생겨 일반적으로 **주연부의 비중이 커지고 내부 서식처가 줄어든다**. 따라서 '주연부 서식처가 줄어들어 주연부 종의 개체군이 작아진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주연부 환경에 적응한 종은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넓고 연속된 내부 서식처를 필요로 하는 종은 불리해진다.

NoteBase

문 8. 경관 분석 방법에서 '형식미학적 접근'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관으로부터 인간이 느끼는 느낌, 감정 등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② 경관의 미적 질은 경관이 지닌 물리적 속성에 따른다는 접근방법이다.

③ 경관을 의미전달체계로 보고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④ 경관의 물리적 속성과 인간의 반응 사이에 계량적 관계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형식미학적 접근은 경관의 미적 질이 **경관 자체의 물리적 속성**에 따른다고 본다. 형태·선·색채·질감과 그 구성 관계를 중심으로 경관을 분석한다.

개념 구분

형식미학적 접근은 **미적 가치가 경관의 형식적 속성에 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형태·선·색채·질감 등의 요소와 이들이 이루는 통일성·다양성 같은 구성 관계를 분석한다. 따라서 경관의 미적 질을 경관 자체의 물리적 속성으로 설명한다.

심리물리학적 접근도 경관의 물리적 속성을 다루지만, 이를 관찰자의 선호도나 미적 평가와 연결하여 **물리적 속성과 인간 반응 사이의 계량적 관계**를 찾는다. 물리적 속성 자체에 미적 질의 근거를 두는 형식미학적 접근과 구별된다.

경관에서 느끼는 느낌·감정을 분석하는 설명은 인간의 심리적 반응에, 경관을 의미전달체계로 보는 설명은 사회·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둔다. 이들은 경관의 형태나 색채 등 형식적 속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설명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9.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_____㉠_____미터 이하이다.

① 2
② 4
③ 6
④ 8

정답 4번

공통 해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5.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 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 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NoteBase

문 10.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90년대 말에 제안되어 2010년대 초까지 영향력 있는 조경계획과 설계의 실천적 이론으로 기능했다.

② 기존 도시계획 이론에 대해 비판적 성격을 지니며, 지속가능한 도시 이용에 대한 요구로 등장했다.

③ 공원과 녹지를 도시의 골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로 인식했다.

④ 조경과 건축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구분해 현대 건축의 실험에서 도시 문제를 관리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과 건축의 경계를 구분하기보다 **분야 간 경계를 넘어 통합**하는 접근이다. 건축물의 형태만으로 도시를 조직하기보다 경관과 생태적 과정을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중심 원리로 삼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1990년대 후반에 이론적 논의가 구체화되어 2000년대와 2010년대 초 조경계획·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관을 도시 형성의 중심 매체로 삼는 관점이 실제 도시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이론**의 성격을 갖는다.

② O: 기존의 건축물 형태와 전통적 도시 공간 구성에 치중한 접근이 도시의 변화와 환경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생태적 과정과 환경 회복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이용**을 모색했다.

③ O: 공원과 녹지를 건축물 사이에 남은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만 보지 않고, **도시의 골격을 조직하는 기반 체계**로 보았다. 녹지와 열린 공간을 생태적 과정 및 기반시설과 연결하여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④ X: '조경과 건축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구분'한다는 부분이 반대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건축·도시계획을 통합**하여 도시 문제에 접근한다. 현대 건축의 설계 실험도 수용하지만, 이를 건축 분야 안에 한정하지 않고 경관·생태·기반시설의 관계로 확장한다.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식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 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투수성, 통기성, 배수성이 좋을 것
ㄴ. 질소, 인산, 칼륨 등의 필요 성분을 포함하고,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ㄷ. 부식질이 풍부하고 토양이 부드러운 상태일 것
ㄹ. pH가 일반적으로 강알칼리성 토양일 것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일반적으로 식물 생육에는 **약산성에서 중성 범위의 토양**이 적합하다. 강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철 등 일부 양분의 이용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강알칼리성을 일반적인 적합 조건으로 볼 수 없다.

보기별 해설

ㄱ. O: 투수성은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고 통과하는 성질이고, 배수성은 과잉의 물이 빠져나가는 성질이다. 통기성이 좋으면 뿌리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된다. 이들 성질이 적절하면 **과습과 산소 부족을 줄여** 뿌리의 생육에 유리하다.

ㄴ. O: 질소·인산·칼륨 등은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양분이므로 토양에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뿌리를 손상시키거나 생리 작용을 방해하는 유해 물질이 없어야 **양분 흡수와 정상적인 생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ㄷ. O: 부식질은 유기물이 분해되어 형성된 물질로, 토양이 물과 양분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토양 입자가 작은 덩어리로 뭉치는 입단 형성을 도와 토양 구조를 개선한다. 토양이 부드러우면 **뿌리가 뻗기 쉬워**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ㄹ. X: 식물마다 적합한 토양 pH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산성에서 중성 범위**가 적합하다. 강알칼리성에서는 철 등 일부 양분을 식물이 이용하기 어려워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강알칼리성 토양일 것'은 일반적인 식물 생육의 적합 조건이 아니다.

생육에 적합한 조건은 ㄱ·ㄴ·ㄷ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계를 관리, 보호 및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다.

② 순 제로 배출량(Net-Zero)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 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토지 관리를 개선한다.

④ 자연요소를 활용하되,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자연기반해법은 경제성도 고려하지만, **생물다양성 보전과 장기적인 생태계 편익**을 함께 추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적이거나 인간에 의해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다. 생태계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의 복지와 생물다양성에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② O: 숲과 토양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보전하거나 회복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함께, 배출량과 제거량이 균형을 이루는 **순 제로 배출량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③ O: 토지 이용과 관리 방식을 개선하면 탄소 저장량의 손실을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의 물 관리를 개선하여 메탄 배출을 줄이거나 질소 비료의 양과 투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아산화질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토지 관리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접근이 포함된다.

④ X: 자연요소를 활용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자연기반해법은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 인간의 복지, 장기적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단기 이익만을 우선하기보다 환경·사회·경제적 편익이 지속되도록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NoteBase

문 13.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목표종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적 지표종은 유사한 서식지나 환경조건에서 나타나는 군락을 대표하는 종이다.

② 핵심종은 해당 종이 사라지더라도 생태계가 변질되지 않는 종이다.

③ 우산종은 넓은 서식지를 필요로 하며, 보호 시 다른 종의 보전에 기여하는 종이다.

④ 깃대종은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여 서식지 보호에 기여하는 종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핵심종은 **사라져도 생태계가 변질되지 않는 종이 아니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종이다. 핵심종이 사라지면 먹이관계와 종 구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태적 지표종은 특정 서식지나 환경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곳의 **환경 상태와 군락의 특성을 나타내는 종**이다. 따라서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나타나는 군락을 대표하며, 출현 여부나 개체군의 변화를 통해 생태계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② X: 핵심종은 개체수나 생물량에 비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종**이다. 이 종이 사라지면 다른 종의 개체수와 먹이관계가 연쇄적으로 달라져 군락 구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라지더라도 생태계가 변질되지 않는'은 '사라지면 생태계가 크게 변할 수 있는'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우산종은 넓은 서식지 등을 필요로 하므로, 그 종의 생존에 필요한 서식지를 확보하고 보호하면 **같은 공간에 사는 다른 종도 함께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전 효과가 여러 종에 미치는 점이 핵심이다.

④ O: 깃대종은 대중에게 친숙하거나 상징성이 있어 **보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종**이다. 이를 보전 활동의 상징으로 활용하면 해당 종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참여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NoteBase

문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사업계획 면적) 기준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 5,000제곱미터 이상

②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이상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이상

④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 10,000제곱미터 이상

정답 3번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6 · 6월

①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기준은 **사업계획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 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rmLRZD3IXfy7wWuMvuN715qXxv_xcks.webp

비고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 ·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 · 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NoteBase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주차시설 설치사업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 · 진동배출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조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식생복구 사업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 규모란의 지역 · 지구 · 구역 · 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aligned&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aligned

1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NoteBase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 · 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에 해당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 · 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NoteBase

②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기준은 **사업계획 면적 7,500제곱미터 이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 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 · 도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wK_6AMnJNdKg2hS_8BKVfu4jTHUpSubD.webp

비고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 ·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 · 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NoteBase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주차시설 설치사업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 · 진동배출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조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식생복구 사업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 규모란의 지역 · 지구 · 구역 · 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aligned&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aligned

1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 · 휴양에

NoteBase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 · 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에 해당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 · 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NoteBase

NoteBase

③

계획관리지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기준은 7,500제곱미터가 아니라 **사업계획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 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VOpuCX2fGRhnPDzB-eZDB2XhIPq-oHMg.webp

비고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 ·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 · 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시설

NoteBase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주차시설 설치사업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 · 진동배출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조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식생복구 사업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 규모란의 지역 · 지구 · 구역 · 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aligned&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aligned

1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 · 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에 해당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NoteBase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 · 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④

공익용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기준은 **사업계획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기준은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만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가목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L4CskdKdbPblLodCZSjb9Ey2C0KUJVA3.web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8호
비고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NoteBase

문 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생태계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급서비스
② 수요서비스
③ 문화서비스
④ 환경조절서비스

정답 2번

①

공급서비스는 **식량·수자원·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으로, 생태계서비스에 포함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025.10.1>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②

생태계서비스의 법정 유형은 **공급서비스·환경조절서비스·문화서비스·지지서비스**이다. 수요서비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025.10.1>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③

문화서비스는 **생태 관광·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휴양 등의 혜택**으로, 생태계서비스에 포함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025.10.1>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NoteBase

④

환경조절서비스는 **대기 정화·탄소 흡수·기후 조절·재해 방지 등의 혜택**으로, 생태계서비스에 포함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025.10.1>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NoteBase

문 16. 「조경설계기준(2024)」상 휴게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두막은 기둥, 지붕, 지상에서 뜬 마루로 구성되며,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기 위한 구조물을 지칭한다.
② 고속도로의 휴게시설은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쉼터휴게소, 간이휴게소로 구분한다.
③ 고속도로 휴게공간의 휴게시설 규모는 공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된다.
④ 휴게공간은 이용공간과 비이용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한다.

정답 4번

①

원두막은 **기둥·지붕·지상에서 뜬 마루**로 구성되며,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중 휴게시설(KDS 34 50 15:2024) 1.4 용어의 정의
1. 일반사항

1.4 용어의정의

· 휴게공간: 이용자들의 정신수양과 쉼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광장·마당 등의 공간

· 휴게시설: 그늘시렁·그늘막·원두막·의자·야외탁자·평상·정자 등 이용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퍼걸러: 기둥과 들보와 보로 구성되며, 햇빛을 막아 그늘을 제공하는 구조물로서 그늘시렁이라고도 칭함

· 그늘막: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되며,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기 위한 구조물로서 쉘터(Shelter)라고도 칭함

· 원두막: 기둥, 지붕, 지상에서 뜬 마루로 구성되며,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기 위한 구조물

· 의자: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앉음판과 지지기둥으로 구성되는 시설

· 야외탁자: 휴게 및 피크닉 활동을 위해 탁자와 의자가 조합된 시설

· 평상: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마루형태로 구성되며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

· 정자: 집회·경관감상·휴식·비의 차단을 위한 시설로서 기둥, 지붕, 마루로 구성되며, 난간이 부대되는 구조물

NoteBase

②

고속도로의 휴게시설은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화물차휴게소·쉼터휴게소·간이휴게소**로 구분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중 휴게시설(KDS 34 50 15:2024) 2.1.2 (2)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2 고속도로의 휴게시설

(2) 고속도로의 휴게시설은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쉼터휴게소, 간이휴게소로 구분하며, 해당 휴게소의 기능과 규모, 노선의 교통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규모는 **공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하며, 각 구성요소는 단계건설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중 휴게시설(KDS 34 50 15:2024) 2.2.1 (2) ③
2. 조사 및 계획

2.2 계획

2.2.1 휴게공간의 배치

(2) 고속도로의 휴게공간

③ 휴게시설의 규모는 공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되고, 각 구성요소는 단계건설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NoteBase

④

휴게공간은 **시설공간·보행공간·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고, 전체 공간의 보행동선 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이용공간과 비이용공간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중 휴게시설(KDS 34 50 15:2024) 2.2.2 (2)
2. 조사 및 계획

2.2 계획

2.2.2 휴게공간의 구성

(2) 휴게공간은 시설공간·보행공간·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설계대상 공간 전체의 보행동선 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NoteBase

문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고,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골프연습장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땅깎기 또는 흙쌓기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골프장은 9홀 이하의 규모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무도학원, 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체육공원의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1개소**를 설치하고,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골프연습장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과 땅깎기 또는 흙쌓기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을 피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NoteBase

③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은 **6홀 이하**로 제한된다. 선지의 9홀은 허용 규모를 초과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IMktLNdu73V1-BZ1LOlQZK1fywGj4FK.webp

④

도시공원의 운동시설에서 **무도학원·무도장·자동차경주장은 제외**되며, 사격장은 **실내사격장만 허용**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IMktLNdu73V1-BZ1LOlQZK1fywGj4FK.webp

NoteBase

문 18.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② 자연환경과 도시환경

③ 국토환경과 해양환경

④ 산림환경과 해양환경

정답 1번

공통 해설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9.1.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NoteBase

문 19. 경관생태학에서 공간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물질, 종의 흐름 혹은 움직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관의 구조

② 경관의 기능

③ 경관의 변화

④ 경관의 일치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간적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물질·종의 흐름과 상호작용**은 경관의 기능에 해당한다. 요소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경관의 구조와 구별한다.

개념 구분

경관의 기능: 경관을 구성하는 생태계 사이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하고 생물종이 오가는 등 **공간적 요소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숲과 숲 사이로 동물이 이동하는 현상은 종의 흐름이므로 경관의 기능에 해당한다.

경관의 구조: 숲·하천 등 경관 요소의 크기, 형태, 분포 및 **공간적 배치 관계**를 뜻한다. 숲들이 어디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구조이고, 그 사이로 동물이 이동하는 것은 기능이다.

경관의 변화: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다. 공간적 요소 사이의 흐름 자체를 뜻하는 기능과, 그 배치나 흐름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구별한다.

NoteBase

문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상 수질 및 수생태계의 생물 등급이 '매우 좋음~좋음'에 해당하는 생물 지표종은?

① 물달팽이
② 끄리
③ 산천어
④ 밀잠자리

정답 3번

①

물달팽이는 **'보통~약간 나쁨' 등급의 저서생물 지표종**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비고 제3호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2) 생활환경 기준

비고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5XW0dgKlweqgUCcoMF46CiMinJr64PkU.webp

NoteBase

②

끄리는 **'보통~약간 나쁨' 등급의 어류 지표종**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비고 제3호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2) 생활환경 기준

비고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5XW0dgKlweqgUCcoMF46CiMinJr64PkU.webp

③

산천어는 **'매우 좋음~좋음' 등급의 어류 지표종**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비고 제3호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2) 생활환경 기준

비고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5XW0dgKlweqgUCcoMF46CiMinJr64PkU.webp

NoteBase

④

밀잠자리는 **‘보통~약간 나쁨’ 등급의 저서생물 지표종**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비고 제3호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2) 생활환경 기준

비고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5XW0dgKlweqgUCcoMF46CiMinJr64PkU.webp

NoteBase